

2026년 창업진흥원 대전 팁스타운 일본 파트너 초청 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

창업진흥원 대전 팁스타운이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개최하는 「2026년 일본 파트너 초청 상담회」에 참가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창업진흥원장

-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연동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4. 접수방법 - 제출서류 참고

1 상담회 개요

□ **목적** : 창업기업과 해외 현지 파트너와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기반 마련

□ **일자 및 장소** : '26.9.1.(화)~9.2.(수), 창업진흥원 대전 팁스타운 1층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대덕캠퍼스 내 소재)

< 세부 일정(안) >

구분		주요 내용
26.9.1.(화)	오후	유관기관 소개, 일본 파트너 리버스 피칭과 질의응답 ▶ 창업기업 대상 협력 및 파트너십 수요 등 발표(순차통역)
26.9.2.(수)	오전	국내 창업기업 3분 피칭 및 커피챗 ▶ 일본 파트너 대상 기업, 주력 제품/서비스 등 소개(사전 영상 제출)
	오후	일본 파트너-국내 창업기업 간 1:1 매칭 상담회 ▶ 창업기업 당 40분 내외 진행(상담부스 내 통역원 1인 상주)

□ **지원 절차** : 참가기업 모집 및 파트너 매칭 지원

< 일본 파트너 초청 상담회 지원 절차(안) >

① 신청접수	② 파트너 매칭	③ 사전 준비	④ 행사 지원
창업기업 모집, 초청 파트너 공개	제출서류 검토, 신청기업 및 파트너 매칭 지원	창업기업 소개자료 파트너 공유 (3분피칭 영상제출)	파트너별 상담지원 (후속관리 포함)
~ '26.8.13.(목)	~ '26.8.19.(수)	~ '26.8.26.(수)	'26.9.1.(화)~9.2.(수)

창업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제외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기업 모집 개요

□ **지원규모** : 창업기업 총 20개사 내외

- 일본 파트너 1개사 당 창업기업 5개사 내외를 매칭할 예정으로,
신청 시 일본 파트너에 대한 매칭 희망 순위를 함께 제출
- 신청접수 결과 매칭 가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매칭 대상이 임의로
조정되거나 별도 절차(예: 파트너가 선택 등)를 통해 매칭이 완료된
창업기업만 상담회에 참가하게 될 수 있음

< 일본 파트너 섭외 현황 >

NO	구분	파트너명	홈페이지
1	VC	SBI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SBI Investment Co., Ltd.)	https://www.sbinvestment.co.jp/
2	VC	JIC벤처그로스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JIC Venture Growth Investments Co., Ltd.)	https://www.j-vgi.co.jp/
3	CVC	주식회사 tb 이노베이션즈 (모회사: 도쿄무역홀딩스 주식회사)	https://tb-innovations.vc/ (https://www.tokyo-boeki.co.jp/)
4	CVC	코세라 주식회사 (KYOCERA Corporation)	https://www.kyocera.co.jp/

* 일본 파트너별 투자희망 분야, 투자희망 단계 등 세부사항은 [별첨] 참조

□ **지원내용** : 일본 파트너 초청 및 국내 창업기업과 1:1 매칭 주선, 상담장소 제공, 통역 지원 (참가기업 비용 부담 없음)

□ **상담회 구성** : 참가기업 선정 시, 가급적 양일 간 일정 참석 권장

1) '26.9.1.(화) 오후 : 유관기관 소개, 일본 파트너의 리버스 피칭*과 질의응답(파트너당 약 30분, 순차통역으로 진행 예정)

* 리버스피칭 : VC, CVC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협업 수요, 투자 희망분야 등을 소개하고 이에 적합한 창업기업의 참여나 제안을 유도하는 발표

2) '26.9.2.(수) 오전 : 국내 창업기업 3분 피칭, 참석자 간 자유로운 네트워킹을 위한 커피챗 운영

3) '26.9.2.(수) 오후 : 일본 파트너와 국내 창업기업 간 1:1 매칭 상담 (일본 파트너별 상담부스 조성, 부스별 통역원 1인 상주 예정)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6.8.6.)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

*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 가능(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참조)

< 신산업 분야 >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기술	
AI	· AI 모델·인프라	· 반도체 · 모빌리티
Bio	· 양자·보안·네트워크	· 로봇틱스
Contents	· 생명·신약	· 헬스케어
Defence	· 콘텐츠	
Energy	· 방산·우주항공·해양	
Factory	· 친환경	· 에너지·원자력·핵융합
	· 첨단제조(센서·공정 등)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 ▶ **신청가능 업력 : 2019.8.6.~2026.8.5. (신산업 분야 : 2016.8.6.~2026.8.5.) 기간 내 창업한 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 2]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서만 신청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⑥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⑦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⑧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⑨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4

접수방법

□ **접수 기간** : '26.8.7.(금) 9시 ~ '26.8.12.(수) 16시까지

< 접수 유의사항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참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18:00이후) 참가신청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접수 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 **제출서류**

※ 모집공고에 첨부된 신청 양식 활용하며, 그 외 양식 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참가신청서 1부 ([별첨 1] 양식 참고)
- 기업소개서* 1부([별첨 2] 양식 참고)
 - * 기업소개서의 경우 국문, 영문 각 1부 제출 필요
- 기타 제출서류 1부 ([별첨 3] 양식 참고)

<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참가신청서 및 증빙서류	파일 첨부([별첨 1] 참조)	용량제한 30MB
② 기업소개서 * 국문 1부, 영문 1부 모두 제출	파일 첨부([별첨 2] 참조)	용량제한 30MB
③ 기타제출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별첨 3] 참고) 별도 첨부
(선정시) 3분 피칭 영상(일본어)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상담회 신청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필요 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 제외 및 매칭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조치될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시 유의 사항

- 참가기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행사에 불참하지 않으며, 불성실 행위를 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원활한 상담회 진행을 위해 기업 내 의사결정권을 보유한 자가 필수로 참여하여야 함 (대표 또는 임원 등)
- 참가기업 선정 후 파트너 매칭 및 행사 운영 과정에서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음
- 상담 시간표는 상담회 전 개별 안내되며, 상담회 당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담회 당일 파트너별 통역원이 배치되어 순차통역 상담 진행 (순차통역의 경우 한국어-일본어만 제공)
- * 기제출한 자료 외 기업 소개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관련자료 지참 가능
- 선정기업은 향후 성과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응답 및 요청사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일본 파트너와 관련하여 국위 손상 행위를 일체 하여서는 안 됨

6

기타사항

□ 문의처

- (공고 문의) 창업진흥원 대전팁스팀(042-720-4561, 4562, 4563)

별첨
일본 파트너 섭외 세부 현황

NO	기업명	참가 인원	투자희망분야	투자희망단계
1	SBI인베스트먼트(주)	1명	• AI • 로봇 • 기타(엔터테인먼트·SNS)	• Seed • Series A • Series B • Series C
2	JIC벤처그로스인베스트먼트(주)	1명	• 반도체 • 이차전지 • 자동차 • AI • 로봇 • 바이오·헬스케어 • 첨단소재 • 에너지 • 제조장비 • 기타 * 바이오·헬스케어 투자 분야 주력 (전분야 비즈니스 투자 가능)	• Series A • Series B • Series C * 그 외 Growth Stage 투자 중심
3	(주)tb이노베이션즈 (모회사: 도쿄무역홀딩스(주))	1명	• 반도체 • 자동차 • AI • 로봇 • 첨단소재 • 에너지 • 제조장비	• Series A • Series B • Series C * 그 외(Pre-IPO)
4	쿄세라(주)	2명	• 반도체 • 이차전지 • AI • 로봇 • 첨단소재 • 환경·에너지 • 우주/방위/통신 • 신소재·재료개발(MI)	• Seed • Series A • Series B

붙임 1

창업여부 확인 기준표

□ 창업여부 기준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폐업 3년 까지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폐업 3년 까지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것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1.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2**지원 제외 대상 업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외 경제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